

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(사)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의

# 산학협력협약서

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(사)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는 산학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산학연계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각종 정보의 상호 공유
2. 연구, 기술개발, 강의 등 인적자원의 교류
3. 시설 및 장비, 기자재의 공동 활용
4.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
5.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 현장실습, 인턴십 및 취업 기회 제공
6. 기타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 3 조 (가족회사) (사)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는 회원기업이 대구대학교 가족회사에 가입하도록 협조하고, 양 기관은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)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협력 및 지원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4 조 (비용분담) 상기 합의 사항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출연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 본 협약에 의해 취득한 양 기관의 업무상, 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 6 조 (업무주관) 본 협약서에 규정한 업무협력의 운영, 추진은 대구대학교에서 주관하며,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양 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산학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협의토록 한다.

제 7 조 (효력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. 3. 22



산학협력단장 전 하 준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(사)중소기업융합  
대구경북연합회

회장 임 규 태

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